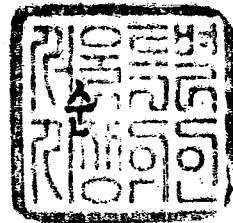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대상자추천및운용요강중개정요강

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96년 4월 25일

서울특별시장 조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대상자추천및운용요강중개정요강안

1. 개정 이유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와 동 조례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의 세부사항인 용자조건, 용자절차, 원리금 상환방법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대상자추천및운용요강을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대상자추천및운용지침으로 변경함.

나. 상업은행자금의 용자조건, 용자절차, 원리금 상환방법을 변경함.

○ 대출한도 : 1억원 이내 → 2억원 이내 (안 제5조).

○ 용자기간 : 1년거치 2년6월 균분상환 → 1년거치 2년 균분상환 (안 제5조).

○ 금액할당 : 구별 등록공장수 → 구별 운전자금조성액과 등록공장수 (안 제6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필요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대상자추천및운용요강중개정요강안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대상자추천및운용요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대상자추천및운용요강'을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대상자추천및운용지침'으로 한다.

제1조중 '요강'을 '지침'으로 한다.

제2조중 '요강'을 '지침'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융자 대상) 자금의 융자대상은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8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자로 한다.

제4조중 '요강'을 '지침'으로 한다.

제5조중 '제3조 및 제4조 규정의 육성자금융자조건은'을 '자금의 융자조건은'으로 하고, 제1호중 '1억원'을 '2억원'으로 하며, 제3호중 '업체에서'를 '이자는 대출업체에서'로 하고, 제4호중 '1년거치 2년 6월 매분기 균등분할상환'을 '1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하며, 원금은 거치기간 경과후 매분기마다 상환한다.'로 한다.

제6조중 '등록공장수'를 '운전자금 조성액과 등록공장수'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2항은 이를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서 정한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중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를 '규칙 제6조의2의'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용자대상 우선순위 등) 구청장은 용자신청 대상업체수가 용자규모를 초과할 때에는 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용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를 제13조로 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이자보전금 지출 등) 시장은 은행이 지정하는 본·지점에 특별계정을 설치하여 매분기별 이차보전 소요액을 예치하고 은행은 시장이 개설한 특별계정에서 각 대출업체 별로 이차보전금을 정산한다.

제13조를 삭제하고,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대출현황등 통보) 은행장은 자금대출현황과 이자차액 보전내역을 매월 15일과 말일을 기준으로 기준일 경과후 5일 이내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보칙)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업의 목적 및 취지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은행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운영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대출된 자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요강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개 정 안
<p>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대상자추천 및운용요강</p> <hr/> <p>제1조(목적) 이 <u>요강</u>은 서울특별시 소재 중 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은행법 제3조 규정의 금융기관(이하 '은행' 이라 한다)에 의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하 '자금'이라 한다) 융자지원에 따른 융자대상자 추천 및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재원) 이 <u>요강</u>에 의한 재원은 서울특 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은행장 과의 협약에 의하여 조성한 은행자금을 재원으로 한다.</p> <p>제3조(융자대상) 자금의 융자대상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을 운영하는 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할구청장이 추천하는자로 한다. 다만, 비공업지역 소재 비도시형공장 및 이전조건부 등록공장은 제외한다.</p> <p>1.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 ' 법'이라 한다) 제16조 규정의 공장등록 을 필한 제조업자(법 제2조 규정의 아 파트형공장을 포함한다)</p>	<p>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대상자추천 및운용지침</p> <hr/> <p>제1조(목적) -- <u>지침</u> ----- ----- ----- ----- ----- ----- -----</p> <p>제2조(재원) 이 <u>지침</u>에 의한 재원은 서울특 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은행장 과의 협약에 의하여 조성한 은행자금을 재원으로 한다.</p> <p>제3조(융자대상) 자금의 융자대상은 서울특 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8 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자로 한다.</p>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2.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5조제1항의 준공 업지역내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자. 다만, 저소득 시민에게 부업을 제공하 거나 소득증대사업에 기여하기 위한 사 업자 및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원물자 생산업체로 지 정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3.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5조제1항의 준공 업지역이 아닌 비공업지역내에서 법 제 28조 규정의 도시형공장을 영위하는자</p> <p>4.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공해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자의 경우에는 당해 허가 를 받은자</p>	<p>제4조(자금의 용도) -- <u>지침</u> ----- -----</p> <p>제5조(용자조건) <u>자금의 용자조건은</u> ----- -----</p> <p>1. ----- <u>2억원</u> -----</p>
<p>제4조(자금의 용도) 이 <u>요강에</u> 의한 자금의 용도는 운전자금으로 한다.</p>	
<p>제5조(용자조건) <u>제3조 및 제4조</u> 규정의 육 성자금용자조건은 다음과 같다.</p> <p>1. <u>업체당 대출한도 : 1억원</u> 이내</p>	

신 · 구조문대비표

현	개 정 안
<p>2. (생략)</p> <p>3. 이자차액 보전 : <u>업체에서 8퍼센트를 부담하고, 나머지 1퍼센트는 시비에서 부담한다.</u></p> <p>4. 상환 : <u>1년거치 2년 6월 매분기 균등 분할상환</u></p> <p>제6조 (용자금액 할당) 시장은 각 구별 등록 공장수 등의 비율을 감안하여 구별 용자금액을 할당하여 시달하여야 한다.</p> <p>제7조 (용자신청 및 추천절차) ① <u>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구청장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서울지회장 또는 시장이 따로 협약한 은행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1. <u>사업계획서</u></p> <p>2. <u>공장등록증 사본</u></p> <p>3. <u>사업자등록증 사본</u></p> <p>4. <u>공해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사본 (공해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자에 한함)</u></p>	<p>2. (현행과 같음)</p> <p>3. ----- <u>이자는 대출업체에서</u> ----- -----</p> <p>4. 상환 : <u>1년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며, 원금은 거치기간 경과후 매분기마다 상환한다.</u></p> <p>제6조 (용자금액 할당) ----- <u>운전자금 조성액과 등록공장수</u> ----- -----</p> <p>제7조 (용자신청 및 추천절차) ① <u>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서 정한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u></p>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5. 건축물관리대장 및 토지대장 등본</p> <hr/> <p>7. 수출실적 증명서(수출업자에 한함)</p> <hr/> <p>8. 협동조합가입확인서(협동조합 가입자에 한함)</p> <hr/>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서울지회장 및 은행장은 제3조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후 관할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hr/> <p>③ (생략)</p> <hr/> <p>제8조(구 사용자심의위원회) 구 사용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준하여 구 실정에 맞게 구성·운영한다.</p> <hr/> <p>제9조(용자대상 우선순위 등) ①용자 신청 대상업체수가 용자규모를 초과할 때에는 다음순서에 따라 용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p> <hr/> <p>1. 준공업지역소재 도시형입종</p> <hr/> <p>2. 준공업지역소재 비도시형입종</p> <hr/> <p>3. 비공업지역소재 도시형입종</p>	<p style="text-align: center;">< 삭제 ></p> <hr/> <p>② (현행과 같음)</p> <hr/> <p>제8조(구 사용자심의위원회) ----- ----- <u>규칙 제6조의2</u> ----- ----- -----</p> <hr/> <p>제9조(용자대상 우선순위 등) 구청장은 용자신청 대상업체수가 용자규모를 초과할 때에는 <u>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용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u></p>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②제1항의 경우 동일업종에 대한 순위는 동원지정업체 · 수출업체 · 아파트형공장 ·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및 저소득층 부업제공업체 순으로 한다.</p> <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업체 내의 우선순위와 동항에 규정한 이외 업체의 용자 우선순위는 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p>	<p>< 삭제 ></p> <p>< 삭제 ></p>
<p>< 신설 ></p>	<p>제12조(이자보전금 지출 등) 시장은 은행이 지정하는 본 · 지점에 특별계정을 설치하여 매분기별 이차보전 소요액을 예치하고 은행은 시장이 개설한 특별계정에서 각 대출업체별로 이차보전금을 정산한다.</p>
<p>제12조(사후 관리) (생략)</p>	<p>제13조(사후 관리) (현행과 같음)</p>
<p>제13조(기타사항) 이 요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동조례시행규칙의 예와 이 사업 목적 · 취지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은행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 · 운영한다.</p>	<p>< 삭제 ></p>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u>< 신설 ></u></p>	<p>제14조(대출현황등 통보) 은행장은 자금대출현황과 이자차액 보전내역을 매월 15일과 말일을 기준으로 기준일 경과후 5일 이내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u>< 신설 ></u></p>	<p>제15조(보칙)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업의 목적 및 취지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은행의 협외에 의하여 결정·운영한다.</p>